

대구광역시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21
----------	-----

제출년월일 : 2005. 2. 22

발의자 : 김판조 의원
외2인

1. 수정이유

- 대구광역시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농축산경제과를 농축산과와 경제부문에 대하여는 여유기구로 투자지원단을 신설하여 그 사무분장에 투자지원, 공영개발, 경제노정, 상공에 관한사항으로 하였으나,
- 지방화시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수입의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에 비중을 두고자 하였으며, 경제업무를 과(課) 단위로 존속코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골자

- 대구광역시달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에서 여유기구로 “투자지원단” 을 “경제투자지원과” 로 수정
 - 별표에서 “투자지원단” 을 “경제투자지원과”로 수정
- 첨 부 :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수정안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u>	<u>대구광역시달성군 행정기구</u>	-----
<u>설치조례</u>	<u>설치 조례</u>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u>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u> (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 <u>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u> 」-----	-----
제5조(행정관리국) ① 행정 관리국에 <u>총무과자치행정</u> <u>과세무과회계과민원봉사과</u>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② (생략) 1. ~3. (생략) 4. <u>민방위·비상계획·공의근</u> <u>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u> 5. ~6. (생략) 7. 자원봉사·국민운동지원 등 <u>민간협력에 관한 사항</u> 8. ~15. (생략)	제5조(행정관리국) ① ----- ----- <u>총무과세무과</u> <u>회계과문화체육과민원지적</u> 과 ----- ②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 <u>공무원단체 지원·교육지원</u> 에 관한 사항 5. ~6. (현행과 같음) 7. ----- <u>자치지원</u> ----- 8. ~15. (현행과 같음)	-----
제6조(사회산업국) ① 사회산 업국에 복지위생과환경청 <u>소과농축산경제과 및 허가</u> 과를 둔다 ② (생략) 1. ~7. (생략)	제6조(사회산업국) ----- ----- <u>농축산과 및</u> <u>허가민원과</u> ----- ② (현행과 같음) 1. ~7.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8.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삭제>	-----
9. 공단조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
10. 에너지 및 공설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
11. 중소기업지원·노사협력·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항	11. <삭제>	-----
12. (생략)	8. (현행과 같음)	-----
13. (생략)	9. (현행과 같음)	-----
제7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도시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공영개발과를 둔다. ② (생략) 1. ~2. (생략) 3. 재난관리·방재·하천·상수도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13. (생략)	제7조(건설도시국) ① 건설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 관리과 도시건축과 및 공원녹지과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하천	-----
14. 공영개발업무에 관한 사항 간접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4. ~13. (생략) 14. 재난관리·복구지원·지역협력·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여유기구) 사회산업국에 여유기구로 투자지원단을 두고,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투자지원·공영개발 경제 노정·상공에 관한 사항
부칙(2003. 3. 31조례 제1809호) 제2조(한시기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행정과(종전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03. 3. 31조례 제1809호) 제2조(한시기구) <삭제>	제7조의2(여유기구) 사회산업국에 여유기구로 경제 투자지원과를 두고,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경제노정·상공 투자지원·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대구광역시달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김판조 의원 외 2인 발의 -

서명날인서

의원명	서명	날인
김판조	김판조	元
유판호	유판호	元
성증도	성증도	18302